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3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3. 13) 상정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3.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정 진 환)

가. 제안이유

- 현행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의 위원회 구성 위원 중 민간전문가 2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은 민간전문가 3분의 2이상으로 법제화 됨에 따라 투·융자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위원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천시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 2분의1이상을 3분의2이상으로 조정함.
(안 제4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융자심사위원회 개최 실적은 ○ 부결된 횟수는 ○ 교수외에 지역내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회 개최하였음 ○ 부결은 없으며, 조건부 1건 있음 ○ 참고하여 검토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호
의결연월일	2003.3.19 (제103회)

제출년월일 : 2003. 3. 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현행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의 위원회 구성 위원중 민간전문가 2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은 민간전문가 3분의 2이상으로 됨에 따라 투·융자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부천시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전문가 2분의1이상을 3분의2이상으로 조정함.(안 제4조제2항)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지방재정투·용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재정투·용자사업심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2분의 1이상”을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 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u>2분의 1이</u> <u>상</u> 포함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 다.</p>	<p>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현행과 같음)</p> <p>②.....<u>3분의 2</u> <u>이상</u>..... </p>